

광주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0가합6032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일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남훈, 정운섭

피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창주

변 론 종 결 2021. 12. 2.

판 결 선 고 2022. 1. 20.

주 문

1.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으로, 피고와 소외 B 주식회사 사이에 2013. 12. 6. 및 2015. 12. 31. 각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와 소외 B 주식회사 사이에 2013. 12. 6. 및 2015. 12. 31. 각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07. 10. 2. 원고 소유의 토지인 광주 광산구 C, D, E(합계 면적 7,231㎡), B 소유의 토지인 광주 광산구 F, G(합계 면적 2,764㎡, 이하 원고 소유의 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H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투자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장 총칙

제1조(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범위) ② 본 사업의 규모 및 범위는 사업기본계획 및 민간사업계획에 명시된 바에 의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추진방식은 민자유치의 기부채납(BOT) 방식을 준용하되 기부채납은 "갑(원고, 이하 같다)" 소유의 토지 지분율을 적용한다.

4. "갑"은 사업토지의 농업기반시설 용도폐지 및 대체시설을 설치한다.

5. "을(B, 이하 같다)"은 사업토지의 단지조성,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 개발 관련 인허가업무 등을 추진한다.

제5조(사용기간) "을"의 시설 및 부지에 대한 사용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한다.

다만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갑"은 "을"에게 사용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한다.

제6조(소유권의 귀속) ① 본 사업의 소유권에 대하여는 사업토지는 "갑"의 소유로 하고 "을"의 사업비로 설치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물은 "을" 소유로 한다.

②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고정 시설물의 귀속은 제5조에 따라 관리운영권이 만료된 후에는

토지의 지분율에 따라 귀속되고, 이동시설물에 대하여는 “을”의 경비부담으로 철거한다.

제7조(사업시행자의 의무) ④ “을”은 정부지원사업 건축물의 처분제한기간인 10년이 만료되는 즉시 고정시설물에 대하여 “갑”의 권리보전을 위한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갑”의 비용으로 설정하기로 한다.

나. B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9. 2. 18. 접수 제27854호로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B에게 2013. 12. 6. 10억 원, 2015. 12. 31. 24억 원을 각 대여하였다. 라. 피고는 2018. 8. 29.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차전14203호로 대여금 34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B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8. 9. 20.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B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광주지방법원 I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의 2018. 10. 19.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8. 10. 22. 접수 제182870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바. 원고는 2019. 7.경 광주지방검찰청에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B의 사내이사인 J, 피고의 사내이사이자 B의 대표이사이고 J의 아들인 K, 피고의 대표이사이고 J의 아들인 L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광주지방검찰청은 2020. 1. 30.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 2020초재286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은 2020. 8. 3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5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주위적 청구)

1) 이 사건 협약에 따르면, B은 이 사건 건물의 운영을 개시한 2009. 3. 3.로부터 정부지원사업 건축물의 처분제한기간인 10년이 지난 2019. 3. 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인 72% [= $7,231\text{m}^2 \div 9,995\text{m}^2 (= 7,231\text{m}^2 + 2,764\text{m}^2) \times 100\%$, 소수점 이하 버림]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의 72/100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하여줄 의무가 있고,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난 2029. 3. 2.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72/100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B은 피고에 대하여 34억 원의 허위 채무를 부담하고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하였으며, 이에 기해 이 사건 건물이 압류된 바, 위와 같은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협약상의 의무는 사실상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B에 대하여 이행불능 당시의 이 사건 건물 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이는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2) B과 피고는 J의 가족기업인데, B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장차 이 사건 건물의 72/100 지분을 기부채납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2013. 12. 6. 10억 원, 2015. 12. 31. 24억 원을 각 차용하는 내용의 허위 채무를 부담하였다. 이러한 B과 피고 사이의 2013. 12. 6.자, 2015. 12. 31.자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은 B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무효확인 청구(예비적 청구)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은 B이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장차 이 사건 건물의 72/100 지분을 기부채납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자 체결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3. 사해행위 취소 청구(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3. 12. 6., 2015. 12. 31. 또는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2018. 8. 29. 또는 원고가 J, K, L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한 2019. 7.경에는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0. 11. 3.에야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소는 제척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바(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에서 취소원인을 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2) 원고가 2019. 7.경 J, K, L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때 그 고소장(을 제7호증)의 내용을 보면, 원고는 B이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장차 이 사건 건물의 72/100 지분을 기부채납하여야 함에도 가족기업인 피고와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대하여 34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한 다음,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를 확정되게 하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이 압류된 바,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허위 채무로 의심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늦어도 J, K, L을 고소한 2019. 7.경에는 B이 피고와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 대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원고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2020. 11. 3.에야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소는 제척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다.

4. 무효확인 청구(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 · 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 · 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 · 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1570 판결 참조).

다.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장차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72/100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받은 후 그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B이 피고와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허위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를 확정되게 하여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압류된 바, 그 강제집행절차에서 제3자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으면 원고의 위와 같은 권리 행사가 불가능해지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판단이 있더라도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로서는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무효확인 청구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인경, 판사 차유나, 판사 오정민